

9. 바베이도스(Barbados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/자영자/사용자)	(사회보험)6.85%/13.6%/6.75% (사회부조) 2% / 2% / 2%	(사회보험)6.85%/13.6%/6.75% (사회부조) 2% / 2% / 2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(주) B\$1,073, (월) B\$4,650 / (주) B\$21, (월) B\$91	(주) B\$1,112 (월) B\$4,820 / (주) B\$21, (월) B\$91	상한 주 B\$39 ↑ 월 B\$170 ↑
연금수급 개시 연령	66.5세	67세	0.5세 ↑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500주	500주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37년(사회부조)
- **현행법** : 1966년(사회보험), 1969년(사회부조) 및 2007(재난기금)

2 제도형태

- **사회보험 및 사회부조**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**당연적용** : 공공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바베이도스 거주하는 근로자 및 자영자
 - **임의적용** : 가능
 - **적용제외** : 무급 가족노동자
- **사회부조** : 바베이도스 거주자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적용소득의 6.75%(정부고용정규직 6.2%; 외국인서비스지원 5.93%; 임의가입 8.3%) + 재난기금 0.1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 소득 : 주급 근로자의 경우 주 B\$21,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B\$91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: 주급 근로자의 경우 주 B\$1,112,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B\$4,820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 - 재난기금은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
- 사회부조 : 적용 소득의 2%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분기소득의 13.5% + 재난기금 0.1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소득 : 연 B\$1,092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 : 연 B\$57,840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 - 재난기금은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된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
- 사회부조 : 분기 소득의 2%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적용임금의 6.75%(정부고용정규직 6.2%; 외국인서비스지원 5.93%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 소득 : 주급 근로자의 경우 주 B\$21,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B\$91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: 주급 근로자의 경우 주 B\$1,112,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 B\$4,820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급여의 재원으로 쓰임
- 사회부조 : 적용 임금의 2%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없음(사용자로서 기여)
- 사회부조 : 결손 부분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150주 이상을 포함하여, 가입기간이 500주 이상인 67세 도달자
 - 조기연금 : 더 이상의 고용이나 자영에 종사하지 않는 60세 도달자
 - 연기연금 : 70세까지 연기 가능
- 노령일시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이 50주 이상 500주 미만인 67세 도달자

※ 가입자가 질병, 출산, 산재급여를 받은 완성된 납부대상 기간(매주)과 질병급여 청구 기간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질병급여에 대한 3일의 대기기간은 보험료 납부로 인정

- 비기여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67세 도달자로 40세 이후 12년(국민) 또는 15년(영주권자)로 이상 거주하였거나 18세 이후 총 20년 이상 거주하였으며, 사회보험 노령연금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노령연금에 대한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
※ 사회보험 노령급여 국외지급 가능, 비기여노령연금 국외지급 불가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 : 정상 퇴직연령 미만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150주 이상이고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
- 장애일시금(사회보험) : 정상 퇴직연령 미만으로 보험료 납부 또는 납부인정 기간이 50주 이상 150주 미만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지급

※ 가입자가 질병, 출산, 산재급여를 받은 완성된 납부대상 기간(매주)과 질병급여 청구 기간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질병급여에 대한 3일의 대기기간은 보험료 납부로 인정

- 비기여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18세 이상으로 시각, 청각, 언어능력의 심각한 문제로 근로활동이 불가하고, 사회보험 장애연금이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장애 연금을 받지 않아야하며 소득이 주 B\$30 이하여야 함

※ 사회보험 장애급여 및 비기여장애연금 국외지급 불가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이었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 - 수급권자 : 사망자와 동거하였거나 온전히 피부양 상태였던 유족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(학생인 경우 25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
 - 배우자 재혼 또는 동거 시 지급 중지

- 장제비(사회보험) : 사망자가 또는 그 배우자가 사회보험의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질병급여, 출산급여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- ※ 유족연금 및 장제비 국외지급 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(사회보험)

- 노령연금
 - ① 2002년 12월 31일 기준 56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, 연평균소득의 40% + 500주 초과하는 납부기간에 대하여 가입자 연간 평균 소득의 1% 추가
 - ② 2002년 12월 31일 기준 47세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, 최초 납부기간 20년에 대해 연간 평균 소득의 2% + 20년 초과 기간 1년당 연간 평균 소득의 1.25%
 - ③ 2002년 12월 31일 기준 47 ~ 55세인 가입자의 경우, 연금의 50%는 ①번 산식에 의해서 나머지 50%는 ②번 산식에 의해 계산됨
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 주 B\$1,112, 월 B\$4,820
 - 최저연금액 : 주 B\$239
 - 최고연금액 : 평균 적용소득의 60%, 주 B\$658.14
 - 조기연금 : 감액된 연금 지급
 - 연기연금 : 증액된 연금 지급
 - 연금액 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노령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 매 50주당 연간 평균 적용소득의 6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- ※ 연간 평균 소득은 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5년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, 다만, 근로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의 총 적용소득 기준으로 산출

○ 비기여노령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주 B\$225,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장애급여(사회보험)

- 장애연금 : 연 단위 적용소득 평균의 40% + 500주 초과하는 납부기간에 대한 총 적용 소득의 1% 추가
 - 급여 산정을 위한 최고 소득 주 B\$1,112, 월 B\$4,820
 - 최저연금액 : 주 B\$239
 - 최고연금액 : 평균 적용소득의 60%, 주 B\$658.14
 - 연금액 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- 장애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 또는 납부 인정기간 매 50주당 가입자의 평균 적용소득의 6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
- ※ 연간 평균소득은 가입자의 소득이 가장 높았던 3년을 기준으로 산정, 다만, 근로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가입자의 총 적용소득 기준으로 산출

○ 비기여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주 B\$225,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○ 유족급여(사회보험)

• 배우자 유족연금

① 50세 이상(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 없음)이고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유족배우자에게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 지급

② 45세~49세인 유족배우자에게는 33% 지급

③ 50세 미만인 유족배우자 또는 사망자와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여성 유족배우자에게는 제한적 연금액이 12개월 동안 지급

- 주간 최대 배우자 연금액 : 주간 최대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(주간 최대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은 B\$658.14)

• 고아연금 : 16세(학생은 25세) 미만의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6.67%, 완전고아나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33.3%를 지급

- 주간 최대 고아 연금액 : 주간 최대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33.3%(주간 최대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은 B\$658.14)

※ 유족연금의 총액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수급하거나, 수급권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• 장제비 : B\$2,150의 일시금을 장례비용 납부자에게 지급

• 연금액 조정 : 생계비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

7

관리운영기관

○ 재정경제투자부(Ministry of Finance, Economic Affairs and Investment)

• <https://www.gov.bb/Ministries/finance-economic-affairs>

• 정책에 권한 있는 부서

○ 국민보험청(National Insurance Office)

• <http://www.nis.gov.bb>

• 3자 위원회의 감독하에 보험료 징수 및 제도 운영